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조문 및 용어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제 구성 총괄조정관 추가 개정(안 제4조)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별표 1의2)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 관련 규정 개정(안 제8조, 제12조)

○ 사무의 전결사항 관련 규정 정비(안 제24조)

○ 재난상황 홍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기타 전반적인 조문 정비 및 별표 현행화(안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참고조례(안)」 제6조의2, 제7조, 제12조, 제1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20. ~ 12. 11. (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2.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 중 “차장·통제관·담당관”을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파주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시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지원센터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제관”을 “총괄조정관, 통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를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5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 대책본부장이”를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생한”을 “해당”으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를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한다.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국·소·본부장 및 과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6조제1항 중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해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를 “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6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469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김 양 환
	사회재난예방팀장	김 상 진
	담 당 자	박 영 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주관부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정보통신과
나. 행정안전부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라. 해양수산부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안전총괄과
마.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산림정원과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안전총괄과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시설물 관련부서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주관부서
가. 교육부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평생교육과 보육아동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정보통신과 시설물 관련부서 정보통신과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안전총괄과
라. 외교부	해외재난	-
마. 법무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

	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바.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시설물 관련부서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회계과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차.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예술과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체육과
카.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동물관리과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농업정책과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타. 산업통상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기후에너지과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기후에너지과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기후에너지과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민생경제과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기후에너지과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파. 보건복지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과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육아동과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복지과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보건행정과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질병관리과
거. 기후에너지 환경부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환경정책과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상수도과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상수도과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환경정책과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환경정책과
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 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축디자인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도로관리과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도로관리과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교통정책과
	6)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교통정책과
	7)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러. 해양수산부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민생경제과
서. 여성가족부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
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처. 국가유산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커. 산림청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산림정원과 산림정원과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시설물 관련부서
퍼.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행사주최 주관부서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시설물 관련부서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재난유형에 따라 지정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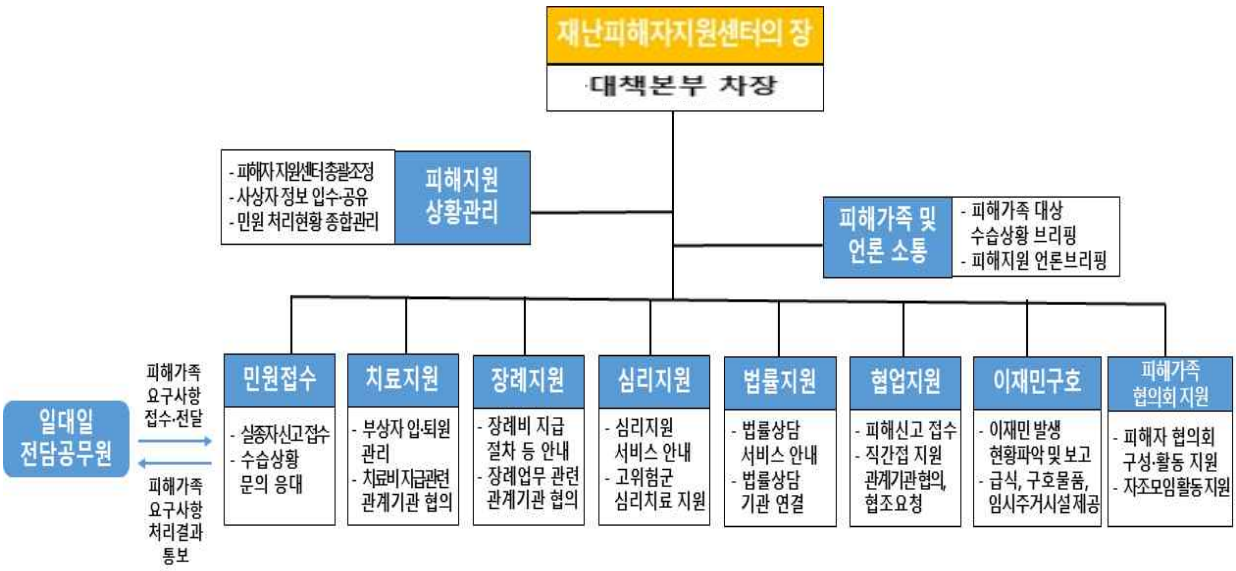
[별표 1의2]

파주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7조의2제4항 관련)

1. 파주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파주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2.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2]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상 1단계 : 호우·태풍 주의보 / 대설주의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table>
<tr><td colspan="2">통제관
(재난담당 실·국·소·본부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보좌</td></tr>
<tr><td colspan="2">담당관
(재난담당과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근무인원</td><td>총 4+α명</td><td>총 4+β명</td></tr>
<tr><td rowspan="3">상황관리
총괄반</td><td>반 장</td><td><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d><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r>
<tr><td>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td><td><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d><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r>
<tr><td>상황보고서 작성</td><td>안전총괄과(1)</td><td>안전총괄과(1)</td></tr>
<tr><td colspan="2"><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r><td colspan="2"><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β)</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able>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2. 비상 2단계 : 호우·태풍 경보 / 대설경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table>
<tr><td colspan="2">통제관
(재난담당 실・국・소・본부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보좌</td></tr>
<tr><td colspan="2">담당관
(재난담당과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근무인원</td><td>총 5+γ명</td><td>총 4+δ명</td></tr>
<tr><td rowspan="3">상황관리
총괄반</td><td>반 장</td><td><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d><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r>
<tr><td>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td><td><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2)</td><td><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r>
<tr><td>상황보고서 작성</td><td>안전총괄과(1)</td><td>안전총괄과(1)</td></tr>
<tr><td colspan="2"><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γ)</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r><td colspan="2"><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able>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3. 비상 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효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table>
<tr><td colspan="2">통제관
(재난담당 실·국·소·본부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보좌</td></tr>
<tr><td colspan="2">담당관
(재난담당과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근무인원</td><td>총 13+γ명</td><td>총 7+δ명</td></tr>
<tr><td rowspan="4">상황관리
총괄반</td><td>반 장</td><td><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d><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r>
<tr><td>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td><td><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3)</td><td><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r>
<tr><td>상황보고서 작성</td><td>안전총괄과(1)</td><td>안전총괄과(1)</td></tr>
<tr><td>행정지원반</td><td>예산법무과(1), 회계과(2),
행정지원과(3), 감사관(1)</td><td>예산법무과(1),
행정지원과(1), 회계과(1)</td></tr>
<tr><td colspan="2"><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γ+)</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r><td colspan="2"><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able>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차 장		대책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라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3. 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각종 행정업무 지원 3. 비상근무에 따른 행정인력 동원 4. 재난현장점검 차량지원 5. 재난수습복구에 관한 재정지원 업무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별 담당시설 응급복구 현황 파악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피해지역별 복구현황 파악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4.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5.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6.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총괄과)	
의료·방역서비스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수색 및 구조 구급반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재난관리 책임기관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대책본부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대책본부 및 실무반 편성

<table>
<tr><td>대책본부장</td><td colspan="2">시장</td></tr>
<tr><td>차 장</td><td colspan="2">부시장</td></tr>
<tr><td>총괄조정관</td><td colspan="2">재난안전 총괄 실·국장</td></tr>
<tr><td>통 제 관</td><td colspan="2">해당 재난관리수습 실·국·소·본부장</td></tr>
<tr><td>담 당 관</td><td colspan="2">해당 재난관리수습 부서의 장</td></tr>
<tr><td colspan="3">실무반 편성</td></tr>
<tr><td>근무인원</td><td colspan="2">총 7+α+β명</td></tr>
<tr><td>반 장(1)</td><td colspan="2">수습부서의 장</td></tr>
<tr><td rowspan="2">재난상황
총괄반
(6)</td><td>상황관리총괄팀</td><td>재난상황실 근무자(2)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1)</td></tr>
<tr><td>수습상황파악팀</td><td>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1)</td></tr>
<tr><td>협업
기능반(α)</td><td colspan="2">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통신 지원반
라) 시설응급 복구반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지원반
차) 자원봉사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구급반</td></tr>
<tr><td colspan="2">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td><td>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대한적십자사, 군부대 등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able>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편제반 구성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근무방법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임무 및 역할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다.

5.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상황관리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구 분		담 당 업 무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구 분		담 당 업 무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6] <삭 제>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4조제1항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전 결 권 자			대책본부장 결재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검토 보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대행) ---------- ---------- ----------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
<신 설>	제7조의2(파주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시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지원센터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

	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생 략)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② ---------- 총괄조정관, 통제관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 과장, 실무반장	1.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본부장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 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신 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신 설>	5. 각 실무반장
<신 설>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 제4조제1항제6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국·소·본부장 및 과장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 해당 ----------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개의----------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	② ----------

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 보고하여야 --.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 법 제38조의2----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생 략)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마련하

	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1.>**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1.>**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② (생 략)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6조의2(시·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시·군·구대책본부에 시·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군·구지원센터의 장은 시·군·구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시·군·구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군·구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지원센터를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0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시·군·구대책본부장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시·군·구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시·군·구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시·군·구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군·구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시·군·구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군·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시·군·구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군·구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실장·국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국장(해당 실장·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시·군·구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시·군·구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군·구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군·구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시·군·구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재난수습 홍보) 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시・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 발생여부와 피해정도 등에 따라 추계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난 수요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작성함.

2.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3. 작성자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장 김양환 사회재난예방팀장 김상진 담당자 박영서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본부장이 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3.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 비상단계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상황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편성기준은 별표 2,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재난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관련 실・국・소・본부장 및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

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교육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도시계획과
행정자치부	8. 정부 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동물관리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기후위기대응과 상수도과 기후위기대응과 기후위기대응과 기후위기대응과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수습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26. 고속철도 사고	교통정책과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
	28. 도로터널 사고	도로관리과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상수도과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교통정책과
	31. 지하철 사고	교통정책과
	32. 항공기 사고	-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34. 건축물 붕괴사고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
국민안전처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도로관리과
	40. 화재·위험물 사고	수습주관부서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안전총괄과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총괄과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안전총괄과
금융위원회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일자리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국가유산청	48.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49. 산불 50. 산사태	산림정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상 1단계 : 호우·태풍 주의보 / 대설주의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table>
<tr><td colspan="2">통제관
(시민안전교통국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보좌</td></tr>
<tr><td colspan="2">담당관
(안전총괄과장)</td><td colspan="2">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근무인원</td><td>총 4+α명</td><td>총 4+β명</td></tr>
<tr><td rowspan="3">상황관리
총괄반</td><td>반 장</td><td><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d><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r>
<tr><td>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td><td><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d><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r>
<tr><td>상황보고서 작성</td><td>안전총괄과(1)</td><td>안전총괄과(1)</td></tr>
<tr><td colspan="2"><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r><td colspan="2"><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β)</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β), 긴급생활안정지원(β), 재난현장환경정비(β),
긴급통신지원(β), 시설응급복구(β),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β),
재난수습홍보(β),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β), 교통대책(β),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β), 사회질서유지(β), 수색구조구급(β)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able>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2. 비상 2단계 : 호우·태풍 경보 / 대설경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table>
<tr><td>통제관
(시민안전교통국장)</td><td colspan="3">대책본부장, 차장 보좌</td></tr>
<tr><td>담당관
(안전총괄과장)</td><td colspan="3">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근무인원</td><td>총 5+γ명</td><td>총 4+δ명</td></tr>
<tr><td rowspan="3">상황관리
총괄반</td><td>반 장</td><td><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d><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r>
<tr><td>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td><td><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2)</td><td><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r>
<tr><td>상황보고서 작성</td><td>안전총괄과(1)</td><td>안전총괄과(1)</td></tr>
<tr><td colspan="2"><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γ)</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γ), 긴급생활안정지원(γ), 재난현장환경정비(γ),
긴급통신지원(γ), 시설응급복구(γ),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γ),
재난수습홍보(γ),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γ), 교통대책(γ)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γ), 사회질서유지(γ), 수색구조구급(γ)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r><td colspan="2"><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δ), 긴급생활안정지원(δ), 재난현장환경정비(δ),
긴급통신지원(δ), 시설응급복구(δ),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δ),
재난수습홍보(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δ), 교통대책(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δ), 사회질서유지(δ), 수색구조구급(δ)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able>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3. 비상 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효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table>
<tr><td>통제관
(시민안전교통국장)</td><td colspan="3">대책본부장, 차장 보좌</td></tr>
<tr><td>담당관
(안전총괄과장)</td><td colspan="3">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근무인원</td><td>총 13+ɣ+명</td><td>총 7+δ+명</td></tr>
<tr><td rowspan="4">상황관리
총괄반</td><td>반 장</td><td><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d><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td></tr>
<tr><td>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td><td><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3)</td><td><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td></tr>
<tr><td>상황보고서 작성</td><td>안전총괄과(1)</td><td>안전총괄과(1)</td></tr>
<tr><td>행정지원반</td><td>예산법무과(1), 회계과(2),
행정지원과(3), 감사관(1)</td><td>예산법무과(1),
행정지원과(1), 회계과(1)</td></tr>
<tr><td colspan="2"><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ɣ+)</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ɣ+), 긴급생활안정지원(ɣ+), 재난현장환경정비(ɣ+),
긴급통신지원(ɣ+), 시설응급복구(ɣ+),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ɣ+),
재난수습홍보(ɣ+),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ɣ+), 교통대책(ɣ+)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ɣ+), 사회질서유지(ɣ+), 수색구조구급(ɣ+)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r><td colspan="2"><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td><td colspan="2">상황관리총괄(δ+), 긴급생활안정지원(δ+), 재난현장환경정비(δ+),
긴급통신지원(δ+), 시설응급복구(δ+),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δ+),
재난수습홍보(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δ+), 교통대책(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δ+), 사회질서유지(δ+), 수색구조구급(δ+)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able>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차 장		대책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라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 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3. 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각종 행정업무 지원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3. 비상근무에 따른 행정인력 동원 4. 재난현장점검 차량지원 5. 재난수습복구에 관한 재정지원 업무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별 담당시설 응급복구 현황 파악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피해지역별 복구현황 파악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4.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5.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6.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총괄과)	
의료·방역서비스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수색 및 구조 구급반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재난관리 책임기관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table>
<tr><td>통 제 관</td><td colspan="2">○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td></tr>
<tr><td>담 당 관</td><td colspan="2">○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td></tr>
<tr><td colspan="3">실무반 편성</td></tr>
<tr><td>근무인원</td><td colspan="2">총 5+α+β명</td></tr>
<tr><td rowspan="2">상황 총괄반
(4+α명)</td><td>반 장(1)</td><td>담당팀장</td></tr>
<tr><td>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td><td>- 재난상황관리반(4+α)
재난상황실 (2)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1)</td></tr>
<tr><td colspan="2">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td><td>상황관리총괄(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td></tr>
<tr><td colspan="2">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td><td>파주경찰서(β), 파주소방서(β), 파주교육지원청(β),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β), 한국전력공사(β), 한국전기안전공사(β), 한국가스 안전공사(β), KT(β), 대한적십자사(β), 군부대(β) 등</td></tr>
</table>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편제반 구성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근무방법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별 실무반 임무 및 역할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다.

5.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비고
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 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시 ·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협업기능	#2. 긴급생활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 · 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 · 지급 독려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 · 관리(수용 · 급식 등) ○ 재해구호물자 확보 ·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 · 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긴급통신지원	○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4. 시설 응급복구	○ 공공 · 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 · 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 장비 · 자재 등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 기능 복구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 장비 · 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 재난관리자원	○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 · 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가동	
	#7. 교통대책	○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 육상교통 · 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총괄과)	

구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비고
협업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 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 · 장비 · 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 · 운영의 지도 · 확인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 운영 및 지도 · 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지원	
	#12.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 · 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13. 재난 수습 홍보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 · 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 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 · 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별표 6]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안전처 고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의 사항	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4조제1항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전 결 권 자			대책본부장 결재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검토 보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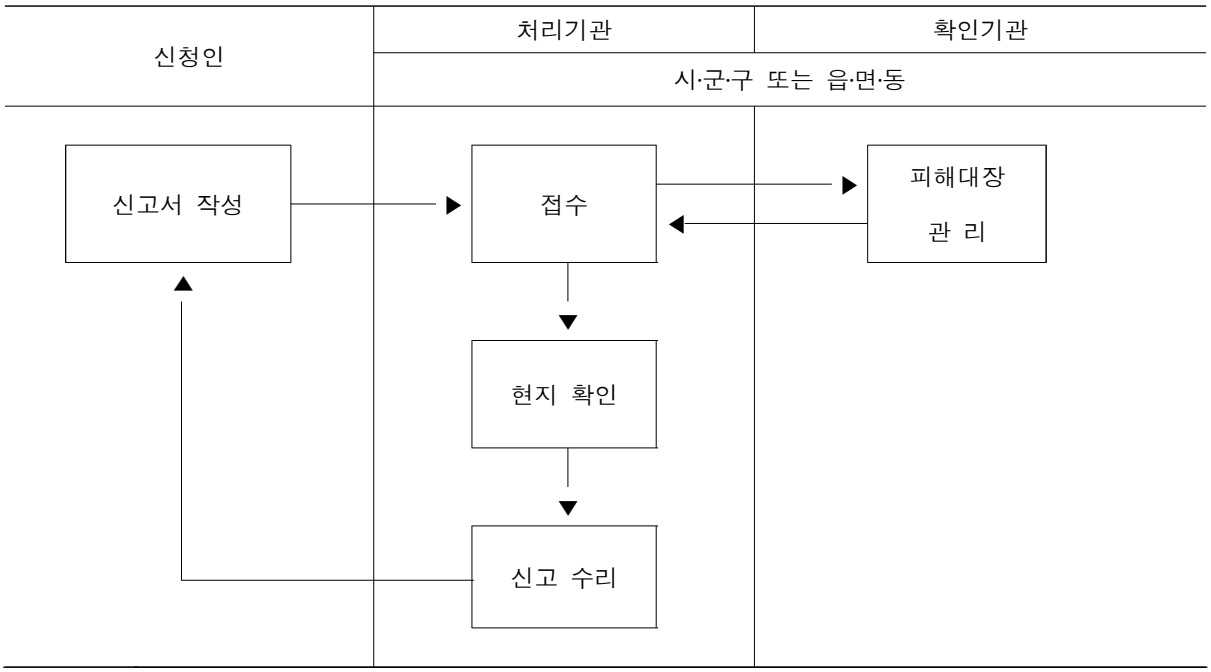
파주시장 또는 OO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

확 인 자 ┌ 중앙 직　　성명　　(인)
　　└ 경기도 직　　성명　　(인)

담당과 장·읍면동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66			
정 책 명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박영서	전화번호	031-940-46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67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박영서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1.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김상진 담당자 박영서
3. 관련법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6조의2, 제7조, 제12조, 제19조	
4. 주요골자	○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제 구성 총괄조정관 추가 개정(안 제4조)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별표 1의2)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 관련 규정 개정(안 제8조, 제12조) ○ 사무의 전결사항 관련 규정 정비(안 제24조) ○ 재난상황 홍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기타 전반적인 조문 정비 및 별표 현행화(안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재난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